

제21.1호

행정명령

**소아마비 전염 지속으로 인한 뉴욕주 전역의 재난 비상 사태 지속 선포**

2022년 7월 21일 록랜드 카운티의 백신 미접종 주민이 소아마비 인큐베이션 기간 중 국외 여행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소아마비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록랜드 카운티에서 확인된 폴리오바이러스가 1990년대 마지막으로 접종된 백신으로 인한 것임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킹스, 나소, 오렌지, 퀸즈, 록랜드, 설리반 카운티에서 2022년 4월, 5월, 6월 7일, 8월, 9월 폐수에서 일반적으로 연관된 폴리오바이러스가 수집되었기 **때문에,**

미국에서 1979년 미국에서 소아마비 백신 접종률이 높아져 소아마비가 퇴치되었기 **때문에,**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백신에 대한 거부감이 높아져 일반적으로 모든 연령에서 소아마비 백신 접종률이 낮아졌기 **때문에,**

뉴욕에서 만 2세 미만 어린이에 대한 백신 접종률이 79%로 몇몇 카운티와 우편번호 지역에서 매우 낮게 나타났기 **때문에,**

지역 보건부가 조사 지원, 접촉자 확인 및 관찰, 노출된 접촉자 및 현재 고위험군에 백신 접종, 교육, 봉사 등을 통해 폴리오바이러스 사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주 정부는 폴리오바이러스에 대한 예방접종 및 테스트를 용이하게 하고 시행하며 질병이 이러한 속도로 계속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각 지자체, 지역, 카운티에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따라** 본인 Kathy Hochul 뉴욕주 주지사는 뉴욕주 헌법 및 뉴욕주 법이 본인에게 부여한 권한에 의거, 이로써 행정명령 제21호에 따라 지속된 국가재난비상사태를 연장하고, 이에 따라 행정명령 및 후속조항에 포함된 조건, 약관 및 효력 정지를 2022년 11월 8일까지 이어갑니다.

**또한** 주 비상시 법률, 지역법, 조례, 명령, 규칙 또는 어느 기관의 규정 또는 그 일부의 준수가 비상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방해, 저해 또는 지연시킬 경우, 혹은 이러한 비상사태 대응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러한 법률, 지역법, 조례, 명령, 규칙 또는 어느 기관의 규정 또는 그 일부를 일시 정지 또는 개정하기 위해 행정부법 제2-B조 제29-a항에 의해 본인에게 부여된 권한으로, 다음 법률을 본 행정명령 일자부터 2022년 11월 8일까지의 기간 동안 일시 정지 또는 개정합니다.

- 보건부가 지역사회 긴급의료원에게 사전 승인을 한 경우, 인증 응급 의료 대원 및 선임 응급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테타누스, 퍼투시스, 헤파티티스 B를 포함한 폴리오바이러스 백신 및 Hib 백신 접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데 필요한 범위까지 행정명령 제21조에 따라 공중보건법 3001조 세칙 6 및 7, NYCRR 10장 800.3조 세칙(o) 및 (p), 800.15조에 대한 임시 개정.
- 비환자 대상 명령에 따라 테타누스, 퍼투시스, 헤파티티스 B를 포함한 폴리오바이러스 백신 및 Hib 백신 접종을 공인 의사, 의료조무사 또는 공인 간호조무사의 의학적 감독에 따라 승인 조산사가 할 수 있도록 승인하기 위해 행정명령 제 21조에 포함된 내용처럼 조산사가 폴리오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위해 비환자

특정 처방을 시행하는 것을 허용하기 위한 범위까지 교육법 6951조 2항, NYCRR 8장 79-5.5조를 임시 개정.

- 비환자 대상 명령에 따라 테타누스, 퍼투시스, 헤파티티스 B를 포함한 폴리오바이러스 백신 및 Hib 백신 접종을 승인 약사가 할 수 있도록 승인하기 위해 행정명령 제 21조에 포함된 내용처럼 약사가 폴리오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위해 비환자 특정 처방을 시행하는 것을 허용하기 위한 범위까지 교육법 6801조 2항, NYCRR 8장 63.9조를 임시 개정.
- 비환자 대상 명령에 따라 테타누스, 퍼투시스, 헤파티티스 B를 포함한 폴리오바이러스 백신 및 Hib 백신 접종을 약사 및 승인 간호사가 환자를 대상으로 테타누스, 퍼투시스, 헤파티티스 B를 포함한 폴리오바이러스 방지를 위한 백신 및 Hib 백신 접종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승인하기 위해 행정명령 제 21조에 포함된 내용처럼 의사 및 공인 간호사가 간호사 또는 법에 따라 권한을 부여받은 기타 사람에게 폴리오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위해 비환자 특정 처방을 발급하도록 허용하는 데 필요한 범위까지 교육법 6527조 세칙6항, 공공보건법 제6909조 세칙4항, NYCRR 8장 제64.7조에 대한 임시 개정.

2022년 10월 9일 올버니 시에서 본인에게  
주어진 권한 및 주 인장의 권한에 의해 이를  
발표합니다.

주지사

주지사 비서